

## 「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」 일부개정

「관세법」 제90조 제1항, 「관세법시행규칙」 제 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「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56호)이 24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I. 학술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

「관세법」 제90조,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7조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을, 「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」에서는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추천업무처리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#### 관세법 제90조 (학술연구용품의 감면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.
 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·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  2. 학교, 공공의료기관, 공공직업훈련원, 박물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·교육용·훈련용·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  3.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·교육용품·훈련용품·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. 다만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  4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
####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(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)

-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**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**
      - 가.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
      - 나.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
- (이하 생략)

## II. 주요 개정사항

### 1. 용어정리(제10조)

현행	개정안
<b>제10조(추천대상 및 보고)</b>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,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<b>익월 말일까지</b>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<b>제10조(추천대상 및 보고)</b>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,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<b>다음 달 말일까지</b>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2. 재검토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(제12조)

현행	개정안
<b>제12조(재검토기한)</b>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<b>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</b>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)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<b>제12조(재검토기한)</b>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<b>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</b>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3월 31일 까지)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참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- [붙임1] (제2024-056호)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
- [붙임2] 조문별제개정이유서\_행정규칙\_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

## Contact



정현욱 관세사 / Senior Manager  
 T 051-620-8278  
 E hujung@esein.co.kr



성단샘 관세사 / Manager  
 T 02-6011-3021  
 E dsseong@esein.co.kr